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8회 임시회

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5. 2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 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작년 12월 6일 정부 이송 및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법률」 개정에 따라

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등

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□ 이에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련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

조례상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

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학교 밖 교육활동 시, 사전답사 등

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

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'보조인력')을 배치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5조 제2항 및 제6호의 경우,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,

□ 안 제10조의 경우,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여,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고,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